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과장 김영기)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배 조항 등이 있어 법제처 정비과제 대상이 됨에 따라 일부규정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제1항)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

○ 품질관리원에 대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법제처 정비과제 대상인 조례 제9조제3항은 품질관리원에 대한 자격이나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조례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품질관리원증)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조례로 이동하여 제9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설

○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2항 삭제)

-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산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 삭제

○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안 제14조제2항 삭제)

-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배 조항 등이 있어 법제처의 정비과제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목·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명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공무원으로, 다른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품질관리원증)

(앞쪽)

<p>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품 질 관 리 원 증</p> <p>소 속 :</p> <p>성 명 :</p> <p>생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평 창 군 수 (인)</p>	증명사진
---	------

49mm × 75mm
(인쇄용지(특급)190g/m²)

(뒤쪽)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